

창원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20가단181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의료법인 B

변론 종결 무변론

판결 선고 2020. 4.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고 나. 2020. 3. 13.부터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예지희

청 구 원 인

가. 원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취득

1.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경상남도 김해시 C 와 1필지 D 제6층 E 호동의 소유자인 의료법인이며 동 부동산등에서 "F 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중입니다

(소 갑제1호증 : 부동산등기부등본)

2. 피고의 채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G 에서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동 법원에서는 이를 인용 2017. 08. 01. H 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위 소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순위번호 17번 참조)

3. 한편, 원고는 위 임의경매사건에 응찰하여 원고가 2019. 02. 20. 낙찰 받았으며 같은 달 25일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번호 제11284호로서 촉탁에 의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별지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나. 피고의 희생절차신청과 동 신청의 기각

1.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F 병원"의 경영난 악화로 2019. 01. 30.에 창원지방법원에 희생신청을 하여 동 법원에서는 2019회합10006호로 희생절차가 진행 되었습니다

(소 갑제1호증의 1 : 사건검색표)

2. 위 희생신청은 2019. 05. 30. 기각되었고, 피고는 부산고등법원에 2019. 06. 19.에 항고하였으며 이 또한 2019. 10. 07. 항고기각 되었음이 기록상 확인되는 것입니다
(소 갑제2호증의 2 : 사건검색표)

3. 피고는 위 사건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2019. 10. 17.에 제항고하였으며 대법원에서는 사건 2019마6506호로 2020. 01. 17. 심리불속결정결정을 하여 결국 피고의 희생신청은 최종적으로 기각된 것이 기록상 확인 됩니다
(소 갑제2호증의 3 : 사건검색표)

다. 원고의 인도명령신청과 강제집행 불능

한편,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을 하여 동 결정문(창원지방법원 I)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J 에게 강제집행을 의뢰 하였으나 피고의 희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이유로 집행거절을 당하였으며 피고는 현재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병원을 계속 운영중입니다
(소 갑제3호증 : 인도명령결정문)

(소 갑제4호증 : 강제집행 예고문)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말소청구소송과 원고의 승소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9. 04. 19. 소유권이전말소등기청구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동 법원에서는 2019가합 52143호로 재판을 진행하여 2020. 02. 13. 동 청구가 이유없음을 들어 기각선고를 하여 원고가 승소 하였습니다
(소 갑 제5호증 : 사건검색표)

바. 피고의 부당이득과 원고의 재산적 손실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2019. 02. 20.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함으로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2019. 02. 20.부터 원고의 소유인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소 갑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순위번호 26.참조)

2. 그런데, 피고의 회생신청이 최종적으로 기각되었고 현재 피고가 점유하여 "F 병원"이라는 상호로 계속 병원을 경영함으로써 원고는 등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여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것입니다

마. 결론 (피고의 부당이득금 산출)

1. 그러하다면 피고는 2019. 02. 20.부터 지금까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되고 사용료는 피고가 회생절차에서 제출한 병원정상화계획서로 추정되는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월임차료 산정액 금600만원이 피고가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당이득으로서 소장 제기일 현재까지 약1여년간 합계액 금 72,000,000원에 이른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소 갑제6호증 : 병원정상화계획서 발해문)

2. 또한 피고 스스로가 산출한 월임차료에 해당하는 매월 월금600만원을 본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견 소에 이른 것입니다

부동산의 표시

2.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남도 김해시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철골철근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 및 지상8층 제12층근린생활시설 및 의료시설

지3층 556.23㎡

지2층 645.4㎡

지1층 657.59㎡

1층 643.39㎡

2층 642.03㎡

3층 650.6㎡

4층 650.6㎡

5층 650.6㎡

6층 650.6㎡

7층 650.6㎡

8층 650.6㎡

권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6층 호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521.61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상남도 김해시

대 443.4㎡

2. 대 422.5㎡

대지권의종류 : 1, 2.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865,900분의 110,464